

보수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1
제 2 조(적용범위)	1
제 3 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보수의 산정	
제 4 조(임원의 보수)	2
제 5 조(임원에 대한 실비지급)	2
제 6 조(사무총장의 연봉)	2
제 7 조(직원의 보수)	2
제 8 조(초임봉급 획정)	2
제 9 조(연봉의 재획정)	3
제10조(보수의 지급 등)	3
제11조(보수계산)	3
제12조(보수의 감액)	3
제13조(휴직자의 보수)	3
제14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3
제3장 수당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4
제16조(파견직원 수당)	4
제17조(복리후생비)	4
제4장 퇴직금	
제18조(퇴직연금)	4
제18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5
제19조(근속년수의 계산)	5
제20조(지급일)	5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5장 복지후생	
제27조(수혜대상)	5
제28조(복지후생비)	5
제29조(보건관리)	5
제30조(직무상 질병치료의 보조)	6
부칙	6
별표	
1. 위원장 직무수행경비	8
2. 사무총장 연봉	8
3. 직원 연봉 기준표	8
4. 경력 환산율표	9
4-1. 연봉 책정 기준표	9
4-2. 경력 가산 기준표	10
5. 파견직원 수당 월 기준표	10

보수규정

제정	2007. 7. 2.
개정	2008. 1. 7.
개정	2008. 12. 24.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12. 28.
개정	2012. 1. 10.
개정	2013. 4. 9.
개정	2014. 1. 20.
개정	2016. 3. 21.
개정	2016. 12. 21.
개정	2018. 2. 21.
승인	2018. 2. 2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792호
개정	2018. 12. 19.
승인	2019. 1. 1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129호
개정	2019. 12. 9.
승인	2020. 1. 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4254호
개정	2020. 12. 18.
승인	2020. 12. 2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6469호
개정	2021. 12. 28.
승인	2022. 1. 3.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30호
개정	2022. 7. 21.
승인	2022. 7. 27.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2207호
개정	2022. 12. 22.
승인	2023. 1. 1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170호
개정	2023. 12. 15.
승인	2024. 1. 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11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6.3.21.>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 임·직원 보수는 법령이나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3.21.>

②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라 함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0.>
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직무수행경비”라 함은 임원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위한 대외 활동비로 매월 지급하는 정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0., 2016.3.21., 2018.2.28.>
6. “기타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2.1.10.>
7. 성과연봉은 근무실적 평가,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20., 2016.12.21.>

제2장 보수의 산정

제4조(임원의 보수)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에게 별표 1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1.7., 2016.12.21., 2018.2.28>

제5조(임원에 대한 실비지급)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감사가 위원회 업무상 여행을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3.21.>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 위원 및 감사가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비상임 임원이 위원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3.21., 2018.2.28>

제6조(사무총장의 연봉) ① 사무총장의 연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1.>

1. 삭제 <2009.12.29.>
 2. 연봉의 계산기간은 법인의 회계연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총장의 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직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보수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 ③ 회계연도 중에 취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 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④ 사무총장이 휴직하는 그 기간 동안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개정 2012.1.10., 2016.12.21.>

② 임용권자는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봉계약을 직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2.1.10., 2016.12.21.>

③ 차기년도 연봉조정은 일괄적으로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개정 2012.1.10.>

제8조(초임연봉 확정) ① 사무총장과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은 별표 2와 별표 3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다만, 연봉 하한액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연봉 하한액의 130% 이내에서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되 직급별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1.>

② 신규 채용자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정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또는 매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버린 후

일할 계산하여 가산하고, 별표 4-1의 연봉책정 기준표에 따른다. <신설 2016.12.21.>

③ 군복무 경력이 있는 자는 3년을 한도로 매 1년에 별표 4-2에서 정하는 채용직급의 경력가산 기준액을 가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 또는 매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버린 후 일할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3년을 초과하는 군복무 경력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6.12.21.> <개정 2012.1.10., 2016.12.21.>

제9조(연봉의 재확정) ① 승진, 휴직, 징계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연봉조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2.1.10.>

② 승진 시 6급에서 5급은 기본연봉의 15% 인상률을 5급에서 1급까지는 각 직급 기본연봉의 10% 인상률을 반영하되 별표 3 직원 연봉기준표의 하한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0.>

제10조(보수의 지급 등)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②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 제외) 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의 보수는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 보수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④ 삭제 <2014.1.20.>

제12조(보수의 감액) 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한 직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21.>

제13조(휴직자의 보수)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휴직기간동안 월보수액의 5 할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휴직기간동안 월보수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①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10을 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의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30을 감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2.28.>

② 제1호의 기간 중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차수당은 예외로 한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2.28.>

제14조의2(징계기간의 보수지급) ① 징계 처분된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8.2.28.> <개정 2022.7.27.>

1. 강등시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는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27.>

2. 정직처분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27.>

3. 감봉처분 기간 중 보수는 1개월(회)당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고, 감봉기간이 2개월(회) 이상일 경우에는 총 감봉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②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7.27.>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제3장 수 당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 2016.12.21.>

1. 시간외근무수당 : 직원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한 수당
 2. 휴일근무수당 : 명령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수당
 3.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수당 <개정 2014.1.20.>
 4. 직책수당 : 과장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수당 <개정 2009.12.29., 2014.1.20., 2016.12.21.>
 5. 대우수당 : 상위직급대우로 발령된 직원에 대한 봉급 6%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
- ②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월차 휴가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비, 급식비,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성과급, 관리업무수당, 등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0.12.28., 2014.1.20., 2016.12.2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파견직원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타 기관의 직원에게 파견수당과 근무처가 서울특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는 매월 주거지원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 ② 제1항의 수당 및 주거지원비는 별표 5와 같다.
- ③ 경기대회 도핑관리 지원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주최·주관기구와의 업무협약 또는 문서로 명시되지 아니한 각종 수당 등을 수령할 수 없다. <신설 2018.2.28.>

제17조(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
2.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퇴직금

제18조(퇴직연금) ① 사무총장과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12.21.>

② 퇴직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으로 지급하며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1.>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분의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월수(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납입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의 연간급여액의 12분의 1로 한다.

③ 휴직, 병가, 연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감액된 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신설 2018.2.28.>

④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6.12.21.> <개정 2016.12.21.>

제18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신설 2022.7.27.>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퇴직금 감액 및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 또는 지급 정지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계산하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6.12.21.>

1. 1년 미만 근속기간 : 근속일수/365

2. 재직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다만,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1.> <개정 2016.12.21.>

제20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6.12.21.>

제21조 삭제 <2016.12.21.>

제22조 삭제 <2016.12.21.>

제23조 삭제 <2016.12.21.>

제24조 삭제 <2016.12.21.>

제25조 삭제 <2016.12.21.>

제26조 삭제 <2016.12.21.>

제5장 복지후생

제27조(수혜대상) 복지후생의 수혜대상은 직원으로 한다.

제28조(복지후생비) ①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각종 보조비 및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

② 복지후생비에 대한 필요한 세부시행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0.>

제29조(보건관리) ① 임직원의 보건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② 보건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시행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직무상 질병치료의 보조) 직원이 위원회 업무수행 중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을 침작하여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부 칙 <2007.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관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3.21.>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1.>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2.28.>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1.>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9.>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3.>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27.>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8.>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5.>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수규정

[별표 1] <개정 2008.1.7., 2014.3.5., 2018.2.28.>

위원장 직무수행경비

구 분	직무수행경비
위원장	월 2.5백만원

[별표 2] <개정 2008.1.7., 2012.1.10., 2016.12.21., 2018.2.28., 2019.1.11., 2020.1.1., 2020.12.29., 2022.1.3., 2023.1.18., 2024.1.5.>

사무총장 연봉

(단위: 천원)

직 명	연간 지금액	
사무총장	하한액	107,123
	상한액	120,513

[별표 3] <개정 2008.1.7., 2009.12.29., 2010.12.28., 2012.1.10., 2013.4.9., 2016.12.21., 2018.2.28., 2019.1.11., 2020.1.1., 2020.12.29., 2022.1.3., 2023.1.18., 2024.1.5.>

직원 연봉 기준표

(단위: 천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하한액	76,113	67,258	59,356	47,948	41,264	33,327
상한액	105,036	92,815	81,949	66,266	57,139	46,148

[별표 4] <개정 2016.12.21., 2018.2.28.>

경력 환산율표

구 분	경력내용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직원 경력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경력(의무복무)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근무 경력 - 체육관련 가맹단체 등 근무 경력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기업 근무 경력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군 복무기간 - <삭제> - <삭제> - <삭제> - 일반 기업체 근무 경력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별표 4-1] <신설 2016.12.21.>

연봉 책정 기준표

경력연수 연봉	1년 미만	1년 이상
금 액	하한액	하한액 + [기준액 × (경력연수 - 3)]

※ “기준액”이라 함은 별표 4-2의 경력가산 기준표의 금액을 말한다.

[별표 4-2] <신설 2016.12.21.>

경력 가산 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기준액
사무총장	840,000
1급	780,000
2급	720,000
3급	660,000
4급	600,000
5급	540,000
6급	480,000

[별표 5]

파견직원 수당 월 기준표

(단위: 천원)

공무원 위원회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파견수당	600	500	400	300	200
주거지원비	500				